

나무병원

■ 업무내용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豫察) · 방제(防除)하며 산불을 예방 · 진화하고 산사태를 예방 · 복구하는 사업

■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	개인
1억원 이상	불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이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다만, 자본금 기준의 200%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산림사업법인은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자, 조경식재 · 시설물공사업자(조경식재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본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2. 기술능력

종류	범위	기술자격
1종	수목진료	1.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6월 27일까지 나무의사 1명 이상 2. 2020년 6월 28일 이후: 나무의사 2명 이상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2종	수목진료 중 처방에 따른 약제살포	<p>(2023년 6월 28일부터 폐지)</p> 1.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6월 27일까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수목치료기술자 B.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의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 · 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2020년 6월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대통령령 제28998호(2018. 6. 26.) 별표 1의6의 2종 나무병원란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6월 27일까지 유효함]

※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3. 시설 · 장비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안에 있어야 한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

신규등록 소요기간

평균 30~45일 이내 소요